

「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

1. 개정이유

자동차 제작기술이 빠르게 발전되고 있고, 해외 주요국과 비교하더라도 다소 과도한 검사주기를 적용하고 있는 일부 차종과 동일한 차종이면서 검사주기가 상이한 대형 승합차에 대한 검사주기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해외 주요국 대비 강한 규제를 적용하고 있는 경형 및 소형 승합차와 비사업용 경형 및 소형 화물차의 최초검사와 차기검사 주기를 각각 1년에서 2년으로 완화하고 사업용 경형 및 소형 화물차의 최초검사를 1년에서 2년으로 완화(안 제8조 별표 1)

나. 사업용 대형 승합차 대비 강화된 검사주기를 적용하고 있는 비사업용 대형 승합차에 대해 당초 차령 5년 초과부터 6개월마다 검사주기를 차령 8년 초과부터 6개월마다 검사를 받는 것으로 완화(안 제8조 별표 1)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9999. 12. 31. ~ 12.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약칭: 자동차종합검사규칙) 일부개정령안

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약칭: 자동차종합검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을 다음과 같이 한다.

■ 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별표 1] <개정 2020. 7. 22.>

종합검사의 대상과 유효기간(제8조 관련)

검사 대상		적용 차령(車齡)	검사 유효기간
승용자동차	비사업용	차령이 4년 초과인 자동차	2년
	사업용	차령이 2년 초과인 자동차	1년
비사업용 경형·소형의 승합자동차 및 화물자동차		차령이 4년 초과인 자동차	1년
사업용 경형·소형의 승합자동차		차령이 4년 초과인 자동차	1년
사업용 경형·소형의 화물자동차		차령이 2년 초과인 자동차	1년
사업용 대형 화물자동차		차령이 2년 초과인 자동차	6개월
사업용 대형 승합자동차		차령이 2년 초과인 자동차	차령 8년까지는 1년, 이후부터는 6개월
비사업용 대형 승합자동차		차령이 3년 초과인	차령 8년까지는 1년,

		자동차	이후부터는 6개월
중형 승합자동차	비사업용	차령이 3년 초과인 자동차	차령 8년까지는 1년, 이후부터는 6개월
	사업용	차령이 2년 초과인 자동차	차령 8년까지는 1년, 이후부터는 6개월
그 밖의 자동차	비사업용	차령이 3년 초과인 자동차	차령 5년까지는 1년, 이후부터는 6개월
	사업용	차령이 2년 초과인 자동차	차령 5년까지는 1년, 이후부터는 6개월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3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검사 유효기간에 관한 적용례) 별표 1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종합검사를 받는 자동차부터 적용한다.

〈 의안 소관 부서명 〉

국토교통부 자동차운영보험과	
연 락 처	(044) 201 - 3858